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6, 2026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영국: 2024-2025 회계연도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DPT) 통계 발표

영국 과세당국인 HM Revenue & Customs(HMRC)는 2026 년 3 월 11 일, 2025 년 3 월 31 일로 종료된 회계연도(FY 2024-2025)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및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이전가격에서 총 34 억 파운드(£3.4bn)가 징수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6 억 파운드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고치였던 2020-2021 회계연도 대비 약 12 억 파운드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DPT 를 통해 18 억 파운드가 징수되었으며, 이는 2023-2024 회계연도의 1 억 1,700 만 파운드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HMRC 는 이러한 DPT 징수 증가가 전체 이전가격 관련 세수 확대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유사한 수준의 APA 가 체결되었으며, 평균 체결 기간은 44 개월로 단축되어 2018-2019 회계연도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 상호합의절차(MAP) 실적

총 115 건이 평균 24.8 개월 만에 종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DPT 신고 건수

FY 2024-2025 기간 동안 총 42 건의 DPT 신고가 접수되어, 직전 4 개 회계연도 평균 대비 약 두 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향후 DPT 는 폐지되고 '미반영 이전가격 이익 과세 규정 (unassessed transfer pricing profits)'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에는 현행 DPT 와 같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인도: 소득세 규칙 2026 - 이전가격 관점에서 본 주요 변경 사항

CBDT, 세이프 하버·APA 절차 및 이전가격 준수 관련 규정 개정 확정

2026 년 2 월 8 일, 인도 국세청 내 중앙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해 소득세 규칙 초안(이하 '초안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CBDT 는 2026 년 3 월 20 일, 2025 년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에 따른 「소득세 규칙(Income-tax Rules), 2026」 최종안(이하 '최종 규칙')을 발표했으며, 해당 규칙은 202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안 대비 최종 규칙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PA 소급 적용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그 적용이 제한됩니다.
- APA 대상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기존 Form No. 3CEB 를 대체하는 Form No. 48 에 일부 변경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CBDT 는 상세한 FAQs 및 가이드 노트를 통해 Form No. 48 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IT 서비스 Safe Harbour 제도

CBDT 는 「소득세 규칙 2026」을 통해 기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IT 관련 서비스를 'IT 서비스' 단일 범주로 통합하고, 저위험 IT 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이익률 15.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세이프하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세이프하버는 1 회 신청으로 5 개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거래금액 기준(INR 2,000 crore)은 최초 과세연도에 한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은 저위험 IT 서비스 제공자로, 핵심 기능(기획·설계·전략 수립 등)은 해외 본사가 수행하고 인도 법인은 수행 기능에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자본·자산·무형자산 역시 해외 본사 또는 관계사가 보유하며, 실질적인 통제권도 해외 본사에 있어야 합니다.

저위험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자의 CEO 또는 MD(Managing Director)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거래 행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세이프하버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과세연도의 법정 신고기한까지 Form No. 49 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적용이 확정된 이후에도 매년 관련 거래 내역과 이익률을 보고해야

하며, 기준 이익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진 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Form No. 48 제출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IT 서비스 세이프하버 개편은 인도 내 캡티브(captive) IT 서비스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무상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적부 2021-0131, 2022. 2. 16. 결정

제목: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그룹 내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외 현지에서의 원활한 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이하 '쟁점해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법인은 지주사(AAA)로부터 브랜드 사용권을 허여받아 연결매출총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는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통지관서)은 쟁점해외법인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이 부담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납부(대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예고 하였습니다.
-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을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판매업자나 '계약제조업자'로 규정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통상적인 정상마진만을 보전해주는 이전가격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2) 주요 쟁점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통지관서(과세관청)의 주장: 통지관서는 쟁점해외법인이 상표권의 효용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해외법인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직접 해외 고객을 발굴하고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등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룹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신뢰도 상승 등의 경제적 편익을 얻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자라면 응당 지급했을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지 않고 지주사에 전체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비용을 모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의 주장: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의 기능 및 위험과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쟁점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보조자'에 불과하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통해 수행 기능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정상마진만을 보장받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표권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 증대에 있으며, 고정된 이익률을 보장받는 해외법인에게 별도의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OECD 이전가격 지침 및 상관행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3) 결과

-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예고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채택)하였습니다.
- 우선, 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기능적 측면에서 쟁점해외법인의 주된 역할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제품을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보조하는 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점이 이전가격 목적상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을 궁극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주관자로, 쟁점해외법인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한된 위험만 부담하는 사업보조자로 규정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쟁점해외법인에 그 기능과 위험에 부합하는 정상이익률만 보전할 뿐입니다. 즉, 쟁점해외법인들은 무형자산 사용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과세전적부심사는 쟁점해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위험만 부담하는 사업보조자인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이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및 232조 철강 등 관세 체계 개편 대응

1. 미국 USTR 무역법 301 조(Section 301) 조사 개시 및 확대

1)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과 12일,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하여 두 건의 대규모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행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법적 근거가 확실한 '301조'를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Excess Capacity) 조사: 한국 등 16개 경제권 대상 (3.11 개시)
- 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이행(Forced Labor) 조사: 한국 등 60개 경제권 대상 (3.12 개시)

2) 주요 내용 및 핵심 쟁점

- 과잉생산 조사: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 주력 산업이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책을 통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국 상업을 저해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강제노동 조사: 한국 내 특정 산업(염전 노동 등) 및 공급망 내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했습니다.

3) 향후 타임라인

- 2026.04.15 : 서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신청 마감
- 2026.04.28 ~ 05.05 :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조사 공청회(ITC/USTR) 개최
- 2026.07월 이후 : 조사 결과 발표 및 규제조치(추가 관세 부과 등) 결정 예상

4)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및 추가 관세부과 조치 향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한미 FTA 0% 세율과 별개로 301 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익성 시뮬레이션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강제노동 이슈와 관련된 공급망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철강·알루미늄·구리 추가관세 개편안 발표

1) 개요

미국 현지시간 4월 2일 철강, 알루미늄, 구리 추가관세에 대한 개편안(Proclamations: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 **과세표준 명확화** : (기존)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금속 함량 가치에만 추가 관세 부과 → (변경) 파생상품 전체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 추가 관세 부과
- **적용 범위 구체화** : HTSUS 제72·73·74·76류 외 물품의 경우, 해당 금속의 중량이 최소 15%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관세 부과
- **세율 체계 세분화** : Annex별로 적용 대상 및 세율 구조 구분
미국산 금속 사용 제품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10% 우대세율 적용
영국산 금속 사용 제품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Annex 별로 25% 또는 15% 세율 적용

3) 개편안 상세 내용

• 과세 대상

Annex I 또는 그 후속 Annex에 명시된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그 파생상품 단, HTSUS 제72, 73, 74 또는 76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해당 금속의 중량이 수입물품 중량의 최소 1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만약 여러 금속을 포함하는 경우 합산 중량을 기준으로 함

• 과세 표준

전체 관세가격(Full customs value)에 추가 관세 부과

• 관세율

	부과 대상	부과기준	적용 세율	우대/예외 세율	비고
Annex I-A	알루미늄·철강 제품, 대부분의 구리 제품,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상품	전체 관세가격	50%	영국산 일정 요건 ¹⁾ 충족 시 25%	2026.4.6.부터 적용
Annex I-B	일부 구리 제품,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상품		25%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파생상품 ²⁾ 의 경우 10%	
Annex II	제외 대상으로 변경된 일부 제품	232조 품목관세 미적용	0%	영국산 일정 요건 ¹⁾ 충족 시 15%	2026.4.6.부터 제외
Annex III	과도기 적용 제품	전체 관세가격	최대 25%	미국산 금속을 사용한 파생상품의 경우 10% ³⁾	2026.4.6~2027.12.31
러시아산 제품	러시아산 알루미늄 또는 러시아 제련/주조 알루미늄 포함 제품	기존 러시아 특례 유지	200%	해당 없음	다른 일반세율보다 우선

1) 알루미늄/철강 함량이 최소 95% 이상 영국에서 제련·주조·용해·타설된 영국산 제품에 적용

2) 알루미늄/철강/구리 함량이 최소 95% 이상 미국에서 제련·주조·용해·타설된 미국산 제품에 적용

3) 알루미늄·철강·구리 중 둘 이상의 대상 금속을 포함하는 경우, 추가관세는 금속별로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적용 시점

- **환급**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회급 청구가 가능하며, 이 외에는 환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a) Annex I-B 및 III에 명시된 제품 또는 향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Annex에 추가한 제품
- (b)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이 아닌 제품
- (c) 무역협정 파트너(대한민국, 영국, EU,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의 제품
- (d) 알루미늄, 철강 또는 구리 함량이 전적으로 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에서 제련(Smelted), 주조(Cast), 용해(Melted), 타설(Poured)된 경우

4) 예상 영향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과세 표준(기준 금액)이 제품 전체 가격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관세 부담액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대응 방안

이번 개편안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추가관세의 적용 대상과 과세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관세 부담과 통관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제조회급(Drawback) 기회 활용** : 무역협정 파트너 제품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조회급이 가능, 미국 내 생산 후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 한국산 철강 등을 사용할 시 원가 절감 가능
- **CBP 집행 강화에 따른 신고·소명 리스크 점검 필요** : 불법 환적, 저가 신고 및 기타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CBP의 관리·집행 권한이 강화된 만큼, 원산지 및 가격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
- **Annex 및 세율 구조에 따른 사전 검토 필요** : 수출입 물품의 Annex 해당 여부, 금속 함량 기준 충족 여부, 적용 세율 및 예외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